

2023년도 4분기

---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4. 2.

감사위원회

# 1. 개 요

## ☐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☐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3. 10. 1. ~ 12. 31.(2023년 4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등

## ☐ 접수결과

- 2023년 4분기 총 45건 접수

[표 1] 2023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| 접 수 창 구       | 합 계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공 익 제 보       | 25  | 10  | 13  | 2   |
| 지 원 센 터       | 19  | 11  | 1   | 7   |
| 국민권익<br>위 원 회 | 1   |     |     | 1   |
| 합 계           | 45  | 21  | 14  | 10  |

#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# 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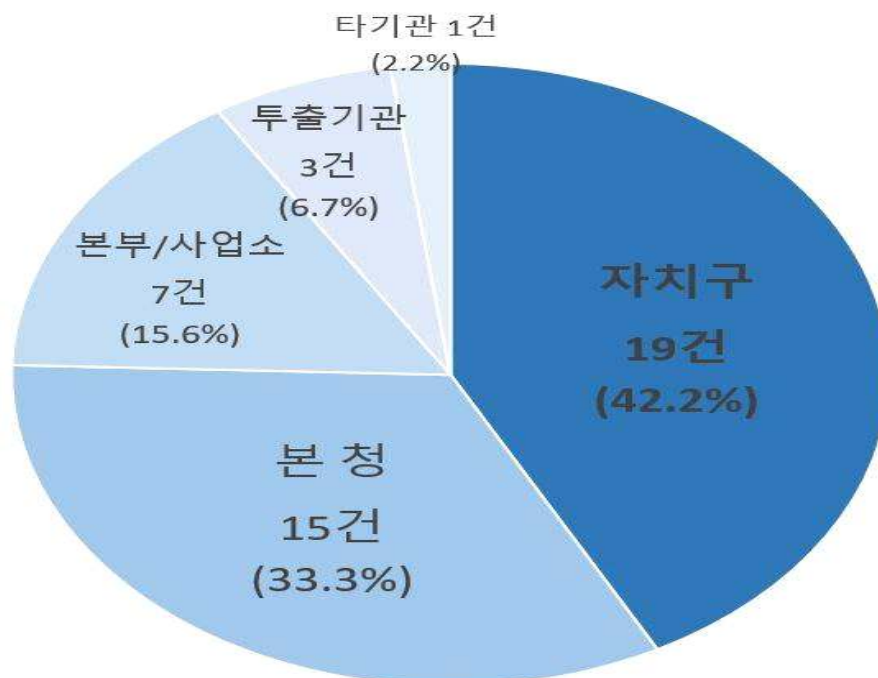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| 경로   | 합 계          | 공익제보지원센터       |                  |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| 온 라인<br>PC/모바일 | 오프라인<br>우편/방문/팩스 | 국민신문고<br>시스템 연계/이첩 |
| 접수건수 | 45<br>(100%) | 42<br>(93.4%)  | 2<br>(4.4%)      | 1<br>(2.2%)        |

\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# 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19건(42.2%)으로 가장 많았음
  -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신고 9건
  - 자치구 직원 복무 등의 부패 신고 10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15건(33.3%), 본부/사업소 소관 7건(15.6%)
 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7건, 부패신고 7건, 기타민원 1건
 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6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3건(6.7%), 타기관 1건(2.2%)
 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부패신고 3건
  - 타기관 1건은 서울시청 외 소관민원



### 3. 공익제보 분류

#### 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45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44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| 총계           | 공익제보 해당 44건(97.8%) |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부패신고               | 공익신고          |             |
| 45<br>(100%) | 27<br>(60%)        | 17<br>(37.8%) | 1<br>(2.2%) |

\* 기타 : 응답소 점검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고 대상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패<br>신고            | 부패방지권익위법<br>제2조(정의)<br>“부패행위”신고   |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br>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br>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br>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 |
| 공익<br>신고            | 공익신고자보호법<br>제2조(정의)<br>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 | 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<br><b>472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직자<br>행동강령<br>위반신고 | 서울시 공무원<br>행동강령 위반 신고             | 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### □ 공익제보 세부내역(총 44건)

○ 부패신고 : 27건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| 구분        | 소관기관        | 건수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업 무 부 적 정 | 본 청         | 4  | 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본 부 · 사 업 소 | 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자 치 구       | 3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투 자 출 연 기 관 | 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소 계         | 1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불 공 정 행 위 | 본 청         | 1  | 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|
|           | 본 부 · 사 업 소 | 3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자 치 구       | -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투 자 출 연 기 관 | -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소 계         | 4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 무       | 본 청         | 2  | 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품위유지 위반 등        |
|           | 본 부 · 사 업 소 | 1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자 치 구       | 7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투 자 출 연 기 관 | 1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타 기 관       | 1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소 계         | 12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         | 계           | 27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 포함

## ○ 공익신고 : 17건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| 구 분             | 소관기관        | 건수 | 내 용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 | 본 자 치 구     | 4  | 재개발 관련 개인정보유출 등      |
| 사 회 복 지 사 업 법   | 자 치 구       | 2  | 복지시설 운영 관련           |
| 식 품 위 생 법       | 본 자 치 구     | 2  | 식품 보관 온도 관련          |
| 택 시 발 전 법       | 본 자 치 구     | 2  | 불법영업 택시 관련           |
| 도 로 교 통 법       | 자 치 구       | 1  | 주차단속 미비              |
| 도 시 정 비 법       | 자 치 구       | 1  | 재개발조합 관련             |
| 석 면 안 전 관 리 법   | 본 청         | 1  | 건축물 석면 안전 관련         |
|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| 본 청         | 1  |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배치 관련  |
| 여 객 자 동 차 법     | 본 청         | 1  | 여객자동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|
| 옥 외 광 고 물 법     | 자 치 구       | 1  | 건물 외벽 광고 현수막 관련      |
| 기 타             | 본 부 / 사 업 소 | 1  | 과장광고                 |
| 총 계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7 |                      |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, 적용 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\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## 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3. 12. 31.기준)

### ☐ 처리 내역(총 45건)

〔표 6〕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| 총계 | 처리완료(8)    |      | 내부종결(17)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진행중<br>(20) |
|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   | 처분<br>(조치) | 개선 등 | 해당없음     | 권한없음<br>(직접제보안내) | 중복 등<br>(중거불충분, 보완요구 등) | 취하 |             |
| 45 | 3          | 5    | 2        | -                | 9                       | 6  | 20          |

※ 개선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### ☐ 처분(조치) 내역

〔표 7〕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| 연번 | 신고구분 | 신고 내용        | 처분기관   | 조치 내역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1  | 부패   | 공무직 복무 관련    | 본부/사업소 | 환수    |
| 2  | 부패   | 보조금 사업 운영 관련 | 본청     | 환수    |
| 3  | 공익   | 택시 불법영업 관련   | 본청     | 특별단속  |